

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[별표 5]

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인적기준·장비기준 및 시설기준(제11조제1항제2호 관련)

1. 인적기준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둘 것

가.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책임운영자 1명

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 1명 이상

- 1) 제1급 조종면허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(제2급 조종면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- 2) 요트조종면허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(요트조종면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- 3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상레저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- 4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상레저분야를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5) 시험대행기관에서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책임운영자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다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 1명 이상

- 1) 「선박직원법」 제4조제2항에 따른 3급 이상의 항해사, 3급 이상의 기관사 또는 3급 이상의 운항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
- 2) 군·경찰 또는 소방관서에서 수상안전관리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3)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수상안전관리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4) 시험대행기관에서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시험관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5)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서 강사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2. 장비기준: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추 것

가. 제9조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 1대 이상

나. 비상구조선 1대 이상. 이 경우 비상구조선의 시속은 20노트 이상이며, 승선정원은 4명 이상이어야 한다.

다. 구명조끼 20개 이상

라. 구명부환 5개 이상

마. 소화기 3개 이상

바. 예비용 노 3개 이상

사. 조난신호장비(자기점화등, 신호홍염) 및 구급용 장비(비상의약품, 들것)

아. 인명구조교육용 상반신형 마네킨 1개 이상

3. 시설기준: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추는 것

가. 이론교육장: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고, 5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것

나. 실기교육장: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계류장과 교육생을 위한 대기시설을 갖추는 것

다. 행정실: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일 것

라. 주차장: 승용차 10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일 것

마. 그 밖의 편의시설: 교육생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화장실. 이 경우 화장실은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을 것

비고

1.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장비 및 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하고, 그 사실을 서류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동안 해당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2. 이론교육장 및 실기교육장에는 해당 교육생의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등의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.